

의안번호	2213586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계번호	25C5592

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사업), 안 제6조(임원) 및 안 제16조(출 연 또는 보조)	감염병감시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안 제5조제1항) 1.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·분석 2.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.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4.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교육 및 파견 5.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6.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7.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8.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9. 검사 분석 교육 및 지원 10.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 11.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.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	의무규정
		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(안 제6조제1항) 원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,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함(안 제6조제2항)	
		국가는 인건비, 사업비,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6조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사업), 안 제6조(임원) 및 안 제16조(출 연 또는 보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운영(안 제5조, 제6조 및 제16조)

- 제정안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·분석·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
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
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감염병감시정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
인건비, 사업비, 시설비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제정
안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설립되고 운영될 시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
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존재
하지 않아, 조직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안 제5조에 따른 사업내용 또한
광범위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가정하여 이를 위한 추가재정
소요를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제정안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
관련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감염병감시정보원 수행 예정업무와 관련한 예산편성내역(2025년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법 제5조제1항 각 호		세부사업명	예산현황		
			세부사업	내역사업	
1	감염병 전과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·분석	질병감시 전략관리	570	274	○ 감염병 정보수집 및 분석 평가: 22 ○ 감염병 정보공유 사업수행: 252
		검역관리	12,949	3,958	○ 전자검역시스템 구축·운영: 2,720 ○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: 1,238

제정법 제5조제1항 각 호		세부사업명	예산현황		
			세부사업	내역사업	
2	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	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 스템 구축운영	2,575	2,575	○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: 2,575
6	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				
3	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	질병관리 국제협력	829	829	○ 국제협력 기반구축: 251 ○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: 188 ○ 감염병대응 글로벌공조 강화: 390
		감염병 관리 국제부담금 (ODA)	2,045	2,045	○ WPRO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: 2,045
4	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	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	2,472	946	○ 역학조사관 교육: 946
5	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	질병관리 국민소통	561	277	○ 디지털 홍보: 277
7	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	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	21,476	6,339	○ 감염병관리지원: 6,339
				8,070	○ 감염병표본감시기관 운영: 830 ○ 수인성 식품매개 및 호흡기감염병 관리: 286 ○ 병원기반형 감시체계 구축: 1,205 ○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 영: 5,749
8	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	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·감시·분석	2,284	834	○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: 834
9	검사·분석 교육 및 지원	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	2,129	1,991	○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: 892 ○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감 시: 616 ○ 노로바이러스 유행감시: 350 ○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 시: 133
합 계			47,890	28,138	

자료: 질병관리청

- 따라서 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